

노 · 사 협의체 회의



2022. 09. 29. - 01차

보관 게시


결 재	작성	승인	승인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 장 명	무창포항 개발사업	개최일시	2022. 09. 29. 13:00
회의장소	상황실	참석인원	6명

노사 협의체 공동 위원장					
사용자 대 표	곽현민		근로자 대 표	황헌익	

안전관리자		
(주)한양	박준수	
보건관리자		

근로자 대표 지명 1인		
케이디 산업개발(주)	김용성	
협약에 의한 위촉 1인		

사 용 자 위 원		
협력업체명	성 명	확인(서명)
케이디 산업개발(주)	김정기	

근 로 자 위 원		
협력업체명	성 명	확인(서명)
케이디 산업개발(주)	김제영	

노·사 협의체 회의



노·사 협의체 회의

전회차 심의내용,의결사항 및 협의내용

전화차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사항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비 고
<p>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1호)</p>			
<p>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2호)</p>			
<p>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3호)</p>			

전회차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사항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비 고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4호)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5호)			
6.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6호)			

전회차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사항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비 고
<p>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7호)</p>			
<p>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3호)</p>			
<p>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4호)</p>			

전화차 Feed-Back

1.

2.

C

C

전화차 협의사항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2항)	협의내용	협의결과 이행사항	비고 (참고기준)
1.작업의 시작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1호)			
2.작업장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2호)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3호)			
4.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4호)			
5.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5호)			

1.

2.

C

C

금회차 심의내용,의결사항 및 협의내용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사항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비 고
<p>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1호)</p>	<p>의결사항 : 2022년 전사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변경에 의한 현장 안전 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건</p> <p>결정사항 : 1.1 현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및 결과 공지</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1.1 현장사무실 및 안전교육장 게시(공지)</p>	
<p>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2호)</p>	<p>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노사협의체 조직 유지 및 동의의 건</p> <p>결정사항 : 2.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2.2 노사협의체 조직 구성</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2.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2.2 노사협의체 조직 구성</p>	
<p>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3호)</p>	<p>의결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변경</p> <p>결정사항 : 3.1 채용·특별 안전교육 : 07시 10분 부터 정기교육 : 13시 10분 부터</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3.1 교육시간 변경 완료</p>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사항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비고
<p>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4호)</p>	<p>의결사항 : 작업환경 측정 및 노사합동점검 실시</p> <p>결정사항 :</p> <p>4.1 작업환경 측정 실시(1차:22.10 or 11 예정)</p> <p>4.2 노사합동안전점검 실시('22.10 예정)</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4.1 작업환경 측정 실시 10월 또는 11월 실시 예정</p> <p>4.2 노사합동안전점검 10월 14일 실시 예정</p>	
<p>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5호)</p>	<p>의결사항 :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건</p> <p>결정사항 :</p> <p>5.1 무장포항 개발사업 소속 근로자 배치전 건강 검진 실시('22.10 예정)</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5.1 배치전 건강검진 10월 6일 ~ 7일 실시 예정</p>	
<p>6.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6호)</p>	<p>의결사항 : 인근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의한 현장 안전조치의 건</p> <p>결정사항 :</p> <p>6.1 철근 찢림방지 조치의 건</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6.1 현장내 철근 이음부 찢림사고 대비를 위해 철근노출부위 발견시 즉시 철근캡, CD관을 사용하여 조치결정</p>	

심의,의결사항

심의·의결사항	의결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비고
<p>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7호)</p>	<p>의결사항 : 당현장 산업재해 발생 사항 공표 및 동의의 건</p> <p>결정사항 : 7.1 2022년 09월 29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건 “0”</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7.1 당현장 산업재해 발생건 ‘0’건 공표</p>	
<p>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3호)</p>	<p>의결사항 : 낙하물 방지망 설치의 건</p> <p>결정사항 : 8.1 현장 여건에 맞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8.1 시스템 비계 근로자 이동 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예정</p>	
<p>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4호)</p>	<p>의결사항 : 근로자 작업중지권 홍보의 건</p> <p>결정사항 : 9.1 근로자 안전교육시 수시로 전파</p>	<p>★찬성 : 6명, 반대 : 0명</p> <p>9.1 안전교육장 및 근로자 휴 게소 근로자 작업중지권 홍보 물 부착</p>	

금회차 협의사항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2항)	협의내용	협의 결과	비고 (참고기준)
1.작업의 시작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1호)	1.1 작업시작 시간 유지 조회시작 : 06시 50분 : 각팀 TBM 후 실시 후 작업투입	1. 작업시작 시간 유지 전원동의	
2.작업장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2호)	2.1 현장통 운영	2. 현장통 유지 전원동의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3호)	3.1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동영상 시청 등)	3. 정기안전보건교육시 실시 협의	
4.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4호)	4.1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교육의 건 (참석대상 및 시간·장소 등)	4. 위험성평가 참석대상, 시간 및 장소 SNS 공지 협의	
5.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5호)	5.1 사업주와 수급의 연락방법 : 현장통 운영	5. 현장통 유지 전원동의	

건의사항

전화차 건의사항

구분	건의자	건의사항	대처방안	주관팀
1				
2				
3				
4				
5				
6				
7				
8				
9				

전화차 건의사항 Feed Back



금회차 건의사항

구분	건의자	건의사항	처리방법	비고
1	근로자대표 / 황헌익	콘크리트 타설시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운영 건	남북방파제 1대 홍원항 1대 (2대 운영)	공사팀
2				
3				
4				
5				
6				
7				
8				
9				

감사합니다.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 한양 귀중

노·사협의체 사업주 대리인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회사명 : 케이디산업개발㈜

공종 : 철근콘크리트공사

사업주 : 현 경 민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 노사협의체 사업주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 아 래 -

구분	성명	직급 및 직책	생년월일	비고
사업주	현 경 민	대표이사	67.06.15	
사업주대리인 (현장대리인)	김 정 기	현장대리인	72.05.27	

2022년 09월 21일

케이디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현 경 민 (직인)

근로자대표위촉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소속 : 케이디산업개발㈜

직위 : 목공

성명 : 황현익

귀 하를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로 노·사 협의체 근로자대표로
위촉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무창포항 개발사업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날 짜 : 2022년 09월 21일

회 사 명 : (주)한양

▣ 근로자대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황 헌 익	60.12.25	케이디산업개발(주)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17, 해방아파트 101동 604호

참석 근로자 총(9)명 중 (9)명의 거수 동의 및 아래 사(使)측 및 노(勞)측 대표들은 노동관련 법령상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상기 인을 대표 권한을 지닌 근로자대표로 선임함에 동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 합니다.

사용자			근로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주)한양	곽현민		케이디산업개발(주)	강철우	
(주)한양	박준수		케이디산업개발(주)	김수일	
케이디산업개발(주)	김정기		케이디산업개발(주)	전유현	
			케이디산업개발(주)	김재영	
			케이디산업개발(주)	진종완	
			케이디산업개발(주)	정갑재	
			케이디산업개발(주)	최진내	
			케이디산업개발(주)	김용성	
			케이디산업개발(주)	정영옥	

무창포항 개발사업

첨부2. 사진대지



내용

근로자대표 선임 거수 동의 실시

장소

안전교육장



내용

근로자대표 선임 거수 동의 실시

장소

안전교육장

근로자 위원 위촉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소속 : 케이디산업개발㈜

직위 : 목공

성명 : 김용성

귀 하를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
노·사 협의체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노·사 협의체 근로자 대표

황헌익



(서명)

무창포항 개발사업

근로자 위원 위촉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소속 : 케이디산업개발㈜

직위 : 목공

성명 : 김제영

귀하를 무창포항 개발사업 현장

노·사 협의체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노·사 협의체 근로자 대표

황헌익

(서명)

무창포항 개발사업